

특許廳職制 < I >

■特許廳 發足에 앞서 지난 3月12日 大統領令 第8,483號로 公布 施行된 特許廳職制는 다음과 같다. ■

제1조 (職務) 특허청은 특허·실용신안·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·심판·항고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

제2조 (下部組織) 특허청에 총무과와 관리국·조사국·심사1국·심사2국·심사3국 및 심사4국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관리관을 둔다.

제3조 (公務員의 定員)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.

제4조 (企劃管理官) ①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.

②기획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.

1.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
2. 사업진도의 파악 및 심사분석
3. 예산의 편성 및 운영
4. 예산집행의 조정·통제 및 결산
5. 조직과 정원의 관리 및 보수제도
6. 행정관리업무개선 및 자체감사
7. 법령안의 입안·심사 및 해석
8. 소송사무 및 소원심사
9.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공업소유권의 교류
10. 소속공무원에 대한 공업소유권 관계법령의 실무 및 기술전문분야와 외국어의 교육
11. 변리사·발명단체 및 기업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공업소유권 관계교육
12. 국가비상사태하에 대비하기 위한 제반계획의 통제·조정 및 확인
13. 정부비상훈련의 실시
14.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

제5조 (總務課) ①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보안
2. 관인관수
3. 공무원의 임용·복무·교육훈련·연금 기타 인사 관리
4. 문서의 수발·편찬·보존·기타 문서관리
5. 배정된 예산의 집행 및 계획
6. 물품의 구매 및 조달
7. 물품의 관리 및 국유재산의 관리
8. 기타 청내의 다른 국·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
제6조 (管理局) ①관리국에 지도과·출원과·등록

과 및 조정과를 둔다.

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,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③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공업소유권의 발명장려와 기업화촉진 및 사후 관리
2. 공무원의 직무발명
3. 국유특허권의 처분·관리
4. 특허권의 수용실시에 관한 사무
5. 특허 또는 등록의 취소 강제실시권의 청구
6. 공업소유권제도의 지도·육성 및 통계의 종합
7. 공업소유권에 대한 민원상담
8. 변리사 및 산하단체의 지도·감독
9. 청내의 각종 위원회에 관한 사무

④출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출원에 관한 서류의 수발
2. 출원에 관한 서류의 방식심사(상표경신출원을 제외한다)
3. 출원에 관한 번호통지
4. 출원에 관한 공시송달
5. 거절사정된 출원서류의 정리
6. 출원대상의 보관 및 열람
7. 출원에 관한 등·초본의 교부·열람 및 증명의 발급
8. 기타 출원에 관한 사항

⑤등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등록에 관한 서류의 수발·편찬 및 보존
2. 등록신청에 대한 방식심사
3. 권리의 설정·말소 및 이전등록
4. 권리자의 등록명의인 표시변경
5. 특허증 및 등록증 발급
6. 각종 등록원부의 비치·보관
7. 등록에 관한 공고 및 공시송달
8. 등록에 관한 등·초본의 교부·증명의 발급 및 원부열람
9. 심판·항고심판과 재심청구의 예고등록 및 심결의 확정등록
10. 질권의 설정등록
11. 촉탁에 의한 등록
12. 상표경신 출원에 관한 서류의 방식심사
13. 기타 등록에 관한 사항

⑥조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특허·실용신안·의장 및 상표의 분류심사
2. 우선심사에 관한 사항
3. 심사기준의 정리 및 배부
4. 심사진행사항의 정리
5. 심사처리에 관한 조사 및 통계

제7조 (調査局) ① 조사국에 자료조사과 및 공보발간과를 둔다.

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,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③ 자료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공업소유권에 관한 내외공보·기술서적·잡지 기타 문헌의 수집 및 분류보관
2. 거절사정된 출원서류의 보관
3. 외국특허명세의 분석
4. 기술문헌의 추출분석
5. 기술동향조사의 종합 및 편집

6. 특정과제에 관한 자료의 조사
7. 자료의 기계검색화
8. 일반인에 대한 공보 및 자료의 열람복사
9. 각종 간행물의 반포일자 증명
10. 자료의 대출·배부 및 열람실의 운영
11. 각종자료에 관한 통계

④ 공보발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공보발행계획의 수립
2. 특허·실용신안·의장·상표·심결(대법원판결을 포함한다). 공보 및 특허연보의 편찬과 발간 배포
3. 외국과의 특허·실용신안·의장 및 상표공보등의 교환
4. 거절사정된 특허·실용신안·의장 및 상표에 관한 출원서류의 분류정리
5. 내외국 특허공보의 분류정리 및 제본

(계속)

政 府 人 事

特許廳

廳長 裨相 稷
 次長 安永 哲
 抗告審判所長 元容 大
 審判所長 車相 弼
 企劃管理官 金國 善
 管理局長 元南 洙
 調查局長 李道 善
 審查1局長 金熙 泰
 審查2局長 韓正 錫
 審查3局長 金柱 河
 審查4局長 李華 翼
 抗告審判官 李秀 宗
 抗告審判官 金正 吉
 抗告審判官 金石 中
 抗告審判官 崔錫 環
 抗告審判官 尹錫 九
 抗告審判官 白南 琪
 抗告審判官 洪性 佐
 抗告審判官 朴鎔 道
 抗告審判官 閔聖 根
 審判官 具永 昌
 審判官 李鏊 相
 審判官 具一 會
 審判官 李大 植

審判官 申伯 澈
 審判官 黃兌 清
 審判官 尹汝 範
 總務課長 高在 玉
 行政1課長 高安 光
 行政2課長 林和 榮
 秘書官 李在 吉
 秘書官 金應 哲
 企劃豫算擔當官 李祥 雨
 行政管理擔當官 金眞 來
 國際業務擔當官 金泰 熏
 研修擔當官 閔拓 基
 非常企劃擔當官 張在 景
 指導課長 李承 初
 出願課長 姜春 鳳
 登錄課長 金炳 薰
 調整課長 金哲 淳
 資料調查課長 趙健 鎬
 公報發刊課長 成增 植
 商標審查官 金慶 元
 商標審查官 李憲 宰
 意匠審查官 元惠 中
 意匠審查官 金英 華
 機械審查官 鄭碩 永
 機械審查官 金鎮 哲

金屬審查官 金振 烈
 電氣審查官 劉永 洙
 電子審查官 朴庠 秀
 有機化學審查官 李鐸 淳
 無機化學審查官 韓義 燮
 藥品化學審查官 李周 基
 農水產審查官 李義 喆
 雜貨審查官 孫永 鎬
 纖維審查官 甘東 勳
 行政事務官 李時 應
 行政事務官 金碩 杓
 行政事務官 李政 東
 行政事務官 金弘 斗
 行政事務官 金基 陽
 行政事務官 朴世 杰
 行政事務官 金正 容
 行政事務官 朴勝 桓
 行政事務官 尹鍾 廉
 行政事務官 金石 煥
 機械技佐 宋在 鍊
 機械技佐 朴炳 昌
 金屬探鑛技佐 金善 用
 電氣通信技佐 金永 吉
 電氣通信技佐 南士 俊
 化工技佐 趙驥 鎬
 藥務技佐 陳今 燮
 織維技佐 河在 玉
 土木建築技佐 辛丁 哲

(1977年 3月 31日 現在)